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38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최은석・주호영・김소희

이인선 • 박성민 • 강대식

이종욱 • 이상휘 • 조정훈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사회적 경쟁 심화, 소득·자산 격차 확대 등에 따른 청년층의 비관적 미래 인식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성년(19세 미만)이전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보호자도 해당 계좌에 최대 20만원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등이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형식으로 집합투자기구에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가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함(안 제44조의2제1항·제2항 신설)
- 나.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매월 20만원을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 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적립금과 보호자적립금 등은 19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 * (중도인출 가능 사유) 아동에게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
- 라. 아동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적립금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정부적립금을 환수함(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 마.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7항 신설).
- 바. 정부가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제6호 중 "제44조의2"를 "제44조의4"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제4호의2 중 "제44조의2"를 "제44조의4"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44조의2"를 "제44조의4"로 한다.

제44조의2를 제44조의4로 한다.

제4장에 제2절의2(제44조의2 및 제4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제44조의2(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아동(제 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8세 이상으로 하며, 18세를 포함한다. 이하이 절에서 같다)이 건전한 자산 형성을 통한 성인으로 성장한 후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금(이하 "정부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정부적립금은 해당 아동 명의로 개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 1조의18제3항에 따른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아동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 ③ 보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적립금(이하 "보호자적립금"이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매월 20만원으로 한다.
- ④ 아동은 적립금(정부적립금과 보호자적립금을 말하며, 운용수익 및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19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에게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은 적립 금만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적립금의 지급을 중지하며, 지급된 정부적립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4. 그 밖에 아동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지급 중단의 사유 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⑦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정부적립금의 지급을 위한 조사·질문, 정부적립금의 지급 결정, 정부적립금의 지급 시기, 아동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의 사후관리, 권리보호, 시효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제10조의 경우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은 "정부적립금"으로, "8세"는 "19세"로 본다.
- ⑧ 정부적립금의 지급, 및 중도 인출 방식·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3(정부의 책무) 정부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건전하고 효율적인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 2.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실시
 - 3. 그 밖에 아동의 경제적 자립 및 건전한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1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 적립금을 지급받은 자
- 제75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 로 한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아동수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아동수당법」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생 략)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	②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데 필	
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	
집 · 관리 · 보유할 수 있으며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
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	
다.	<u>.</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제44조의2</u> 에 따른 다함께돌	6. <u>제44조의4</u>
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② (생 략)	및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4의2. <u>제44조의2</u>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
- 5. ~ 7. (생략)
- ④·⑤ (생 략)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제44조의4</u>
5. ~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
한 등) ①

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 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 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 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 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 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 2. ~ 27. (생략)
- ② ~ ⑦ (생 략)

<신 설>

•
•
1
제44조의4

2. ~ 2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절의2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제도

<신 설>

제44조의2(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아동(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8세 이상으로 하며, 18세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 건전한 자산 형성을 통한 성 인으로 성장한 후의 경제적 자 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에게 매 월 10만원을 지원금(이하 "정부 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한 다.

- ② 정부적립금은 해당 아동 명의로 개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한다)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 ③ 보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적립금(이하 "보호자적립금"이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매월 20만원으로 한다.
- ④ 아동은 적립금(정부적립금과 보호자적립금을 말하며, 운용수 의 및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 이 절에서 같다)을 19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아동에게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에 인 출할 수 있다.
-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18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은 적립금만이 아동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 ⑥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적립금의 지급을 중지하며, 지급된 정부적립금은 환수하여 야 한다.
- <u>1. 사망한 경우</u>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 정이 철회된 경우
- 4. 그 밖에 아동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지급 중단

의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①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정부적립금의 지급을 위한 조사· 질문, 정부적립금의 지급 결정, 정부적립금의 지급 시기,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사후관 리, 권리보호, 시효 등에 대해서 는 「아동수당법」 제6조, 제7 조, 제9조, 제10조(제10조의 경우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은 "정부적립금"으로, "8세"는 "19세"로 본다.

⑧ 정부적립금의 지급, 및 중도
 인출 방식·절차 등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4조의3(정부의 책무) 정부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전하고 효율적인 아동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

<신 설>

<u>제44조의2</u>(다함께돌봄센터) (생 략)

제71조(벌칙)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신 설>

의 지원

- 2.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실시
- 3. 그 밖에 아동의 경제적 자립 및 건전한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제44조의4</u>(다함께돌봄센터) (현행 제44조의2와 같음)

제7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3) -----

- 1. ~ 7. (현행과 같음)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적립금을 지급받은 자
- 제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2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아동 수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 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
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
<u>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2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아동
수당법」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⑥</u> <u>제5항</u>